

15세기 궁궐 正殿 영역의 내부공간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 문헌을 중심으로 -

이 정 국
(공학박사)

주제어 : 정전, 행랑, 내부공간, 공간 이용방식

1. 서론

李 廷 國 은 내부공간의 이용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수 (공학박사).

궁궐건축은 당시 통치이념인 유교의 원리와 통치자의 권위 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내·외부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때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통합된 건축 공간을 형성한다. 따라서 외부공간으로서의 배치의 연구는 내부공간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공간의 생활 방식 등 공간 이용 방식¹⁾ 등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다.

최근에 궁궐건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연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서도 외부공간을 독립된 요소로 인식하여 연구했던 과거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각종 의례와 내부공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이처럼 건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따라서 본 연구는 당시 궁궐건축의 공간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내부공간을 어떻게 이용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궁궐건축의 중심 공간인 正殿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전 영역은 정전의 주위가 행랑으로 둘러싸여 통합된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행랑과 정전이 상호 연관성을 갖게된

해 조선전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을 파악한 논문이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문헌자료 등을 통해 회랑과 행랑, 월랑 등의 쓰임새를 파악하여 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전기 경복궁의 배치특성을 고찰하였다.

조재모의 논문은 궁궐의 중심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정전, 편전, 침전을 儀禮設行의 중심공간으로 규정하고 의례와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조선시대 궁궐의 건축형식을 정립하고 해석한 논문으로 기본적인 궁궐건축형식을 정전, 편전, 침전이라는 三殿體制와 의례의 중심공간으로서의 中央3間廳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를 바탕으로 정전의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의 형식과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장재혁의 논문도 조재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儀禮 특히 『國朝五禮儀』에 의한 禮制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을 해석하고 분석한 논문으로 외부공간으로서의 배치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정전의 내부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조재모나 장재혁의 논문은 궁궐건축의 공간을 파악하면서 건축공간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건축의 내부공간과 의례와의 관계를 포함하였지만 의례와 내부공간의 대응이라는 측면만을 파악하였을 뿐 각 공간의 내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1) 여기에서 공간의 이용방식이란 공간 이용자들의 기거양식과 함께 이들이 내부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건축의 공간구성 형식도 포함한다.

2)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조선 전기 궁궐 정전영역의 내부공간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郭淳熙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曹在模 「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形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먼저 광순조의 연구는 기존의 배치에 관한 추정논문에 덧붙여 문헌에 의한 궁궐운영과 발굴에 의한 복원 고찰을 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전과 함께 정전을 둘러싸는 행랑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대상 건축물로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과 주변의 행랑, 그리고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과 주변의 행랑이 되며 창경궁은 성종 14년(1483)에 창건되었지만 당시에는 임금이 정사를 보기 위한 궁궐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연구대상의 시기는 15세기로 한정하였는데 이때는 1392년 태조에 의해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정종으로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여러 임금을 거치는 동안 각종 문물제도와 의례의 형식이 정해지면서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이다. 이렇게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궁궐의 건축공간 역시 부분적으로는 고려시대의 형식을 계승하고, 때로는 당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면서 조선시대 궁궐의 건축공간이 정착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 의해 궁궐의 내부공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정확한 당시의 동선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궁궐의 공간 구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와의 시간적인 연관성을 갖는 조선초기 궁궐건축의 연구를 통해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고려시대 궁궐건축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행랑의 이용과 내부공간

정전은 4면이 회랑 또는 행랑으로 둘러싸여 엄숙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³⁾ 그런데 정전영역을

한정하는 건물이 순수한 보행용 공간과 같이 내부공간이 비어있으면서 열주성이 강조된 회랑의 형식인 경우와 각 칸들이 벽으로 막혀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랑의 형식인 경우에 따라 공간감은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정전의 공간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랑의 공간구성 형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랑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공간은 용도에 따라 내부의 공간형식이 달라질 것이며 정전의 행랑도 역시 공간의 용도에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각 공간의 용도에 따른 내부공간의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태조 5년 10월에는 권근 등이 국사를 근정전의 西廊에 보관하였는데⁴⁾ 이는 행랑이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말한다. 이외에도 정전의 행랑이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태종 6년 8월에는 풍저창과 광홍창에 있던 곡식을 경복궁의 兩廡에 운반하여 보관하였다.⁵⁾ 그런데 태종 12년 6월 2일에 宮廡의 쌀을 옮기라고 한 것으로⁶⁾ 보아 이때까지도 행랑이 쌀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창덕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정전의 행랑 전체를 창고로 사용해도 무관했었다.⁷⁾ 행랑에는 이처럼 국사나 곡식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布貨⁸⁾ 등 다양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행랑이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 내부 바닥감은 흙이나 마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행랑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했다는 것은 특정한 공간구조로 고쳤음을 의미한다. 특히 곡식을 보관하는 등 습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흙바닥보다

3) 回廊은 '正堂의 좌우에 있는 긴 집채'라 하고 行廊은 '대문 안에 죽 벌여서 지어 주로 하인이 거처하던 방'이라 하는데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1984년) 본 논문에서는 주건물의 주위를 둘러싸는 건물로 보행을 위하여 칸 사이가 벽으로 막하지 않고 연속되면서 한 면 또는 양면이 개방된 건물을 회랑이라 하고 칸 사이가 벽체로 막혀 폐쇄된 형태로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행랑이라 하였다.

곽순조는 행랑을 거주나 보관을 위한 '房'들이 연이어 있는 廊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사정전 행랑, 홍례문 행랑 등은 모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밤에 숙직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월랑은 건물에 덧붙여져서 복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로, '月'字와 같이 구조체가 노출되어 있는 즉, 기둥 사이에 벽을 막아 '房'을 만들지 않은 廊을 일컫는다고 하였는데 각

주 177)에 의하면 '근정전의 경우, 행랑과 월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이는 근정전 행랑이 근정전에 덧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도 기둥이라는 구조체만으로 이루어진 지금과 같은 열주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하여 당시 근정전의 행랑을 현재의 근정전에서 보이는 보행용 공간인 회랑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곽순조, 앞의 논문, p.53, p.54, p.59 참조)

4) 태종실록 권제10, 태종5년 10월 2일 甲子.

5) 태종실록 권제12, 태종6년 8월 5일 辛卯.

6) 태종실록 권제23, 태종12년 6월 2일 乙卯.

7) 또한 세조 10년 7월에도 창덕궁의 행랑을 창고로 수리해서 사용했었는데(세조실록 권제33 세조10년 7월 1일 壬子) 이때 임금은 경복궁에 머물러 있었다.

8) 연산군일기 권제54, 연산군10년 7월 14일 壬寅.

는 습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마감되어야 할 것이다.

諸司의 창고가各司에 부속된 행랑에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창고에 土榻을 설치한 예가 있다.⁹⁾ 여기에서 토탑이라 함은 부분온돌의 경우 고래가 놓이는 부분이 다른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져榻과 같기 때문에 토탑이라 한 것이다. 토탑이 온돌이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건의하였던 것이다.

행랑은 숙직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세조 2년 1월에는 병조당상과 도진무가 근정전의 동랑에서 숙직하도록 하였는데¹⁰⁾ 궁궐의 행랑에서 숙직하는 예는 이전에도 있었다. 태조 7년 8월에 비록 임금의 병이 위급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근정문 밖의 서쪽 행랑에서 왕자들이 直宿하였다.¹¹⁾ 여기에서 芳蓄이 누워있던 곳을 행랑방(廊房)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구조형식은 주택의 행랑방과 같은 방의 형식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행랑방은 바닥이 흙으로 마감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와 같이 왕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면 흙바닥이라기 보다는 온돌이나 마루일 것이다. 그리고 행랑에서 숙직을 했다면 회랑의 형식처럼 각 칸이 연속으로 이어진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각 칸이 벽으로 막혀 여러 개의 폐쇄된 공간으로 구성된 행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전의 행랑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는데¹²⁾ 이때는 임시로 행랑을 사용하였겠지만 행랑에 관청이 위치하여 오랫동안 사무공간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태종 5년 창덕궁이 완공된 후의 규모와 배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승정원청이 3間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행랑을 설명하면서 승정원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승정원청이 인정전의 행랑에 위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그 뒤 승정원은 연영문 안에 있다가 다시 연산군 때에 인정문의 서쪽 행랑에 자리잡게 된다.¹⁴⁾ 승정원의 경우 담당업무의 특성상 정전의

행랑에 위치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관아가 행랑에 위치한 경우가 있었다.¹⁵⁾

그런데 승정원의 내부 바닥마감은 ‘겨울과 여름 坐廳 및 온방’¹⁶⁾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승정원으로 사용되었던 행랑의 바닥마감 역시 마루와 온돌이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처럼 행랑 내부가 마루나 온돌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동궁의 동쪽 행랑에서 불이 났거나¹⁷⁾ 또는 창덕궁의 서쪽 행랑에 불이 났던¹⁸⁾ 것이다.

행랑은 또한 行禮空間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사신이 황제의 聖節로 와서 경복궁에서 의례를 올릴 때 임금은 악차로 나아가고 사신은 동쪽 행랑으로 들어가는데¹⁹⁾ 동쪽 행랑은 임금의 악차와 같은 공간으로서 사신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행랑은 눈과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殿庭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²⁰⁾ 行禮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행랑은 임금이 종친과 재상들과 함께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물론 임금이나 宗宰와 같은 상위 품계의 관원들이 행랑에서 연회를 베푸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²¹⁾ 일반적으로 임금이 정전에서 연회를 베풀 때 관원의 품계에 따라 출입가능한 공간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행랑은 주로 전내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회 공간으로 사용되었다.²²⁾

이처럼 행랑은 조정 신하들의 연회만이 아니라 외국의 使者나 이들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도 연회를 베풀던 공간이었으며 방위에 따라 행랑의 위계가 달리 나타난다. 먼저 東廊은 일본 사신을 대접한 경우도 있었지만²³⁾ 주로 중국의 使者들을 위한

15) 연산군일기 권제53, 연산군10년 5월 30일 己未 참조.

16) 연산군일기 권제55, 연산군10년 8월 28일 乙酉.

17) 세종실록 권제87, 세종21년 10월 26일 辛丑.

18) 단종실록 권제10, 단종2년 3월 24일 乙亥.

19) 세종실록 권제8, 세종2년 4월 17일 乙卯.

20) 세종실록 권제2, 세종 즉위년 11월 8일 甲寅 및 성종실록 권제155, 성종14년 6월 23일 甲申, 같은 책 권제156, 성종 14년 7월 3일 癸巳 등 참조.

21) 성종실록 권제61, 성종6년 11월 16일 辛酉.

22) 세종실록 권제60, 세종15년 5월 26일 戊寅.

23) 세종실록 권제28, 세종7년 4월 12일 辛亥. 같은 곳, 4월 26일 乙丑. 일본의 사신인 西當과 梵齡 등이 殿內에서 임금을 접견했는데 임금이 전내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면 그곳에서 참여했겠지만 전내에서 연회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신들에게만 별도로 동쪽 행랑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권제31, 세종8년 1월 1일 丙申. 이때는 동, 서편 행랑에서 왜인과 아인에게 접대를 하고 있다. 세종8

9) 세종실록 권제32, 세조10년 2월 17일 庚子. ‘諸司 倉庫의 土榻을 철거하여 화재를 방지하게 하소서.’

10) 세종실록 권제3, 세조2년 1월 1일 辛未.

11) 태조실록 권제14, 태조7년 8월 26일 己巳.

12) 세종실록 권제43, 세종11년 1월 24일 辛未. 성종실록 권제2, 성종원년 1월 2일 辛巳. 같은 곳, 1월 28일 丁未. 같은 책 권제281, 성종24년 8월 20일 壬午 등 참조.

13) 태종실록 권제10, 태종5년 10월 19일 辛巳.

14) 연산군일기 권제57, 연산군11년 3월 17일 壬寅.

공간으로 사용되었고²⁴⁾ 서쪽과 남쪽의 행랑은 일본의 使者나 야인들을 위한 연회공간으로 사용되었다.²⁵⁾

이처럼 정전의 행랑이라는 곳이 조정의 신하와 여러 사신들을 위한 연회공간으로서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복궁 창건 초기부터 이미 근정전의 행랑에 수라간 4間을 배치했던 것이다.²⁶⁾ 수라간이 4칸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행랑이 개방되어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행랑공간이 벽체로 막혀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라간이라는 용도를 고려한다면 내부 바닥의 마감은 흙이나 전으로 마감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전 행랑의 내부공간은 창고와 숙직 공간, 그리고 공무와 의례를 위한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연회를 위한 공간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각 공간의 용도에 맞도록 내부공간의 마감이나 전바닥 또는 마루, 운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행랑의 공간구성

년 1월 이후로 동행랑에서는 조정의 신하나 중국의 사자들만을 접대하고 있다.

- 24) 중국의 사자들 중 두목을 남랑에서 대접한 경우도 있었지만(예종실록 권제4, 예종원년 윤2월 21일 丙子) 동랑에서 대접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종실록 권제8, 세종2년 4월 17일 乙卯. 같은 책, 권제62, 세종15년 10월 9일 戊午. 세종실록 권제16, 세조5년 4월 8일 己未. 같은 책, 권제33, 세조10년 5월 27일 己卯 등 참조.
- 25) 세종실록 권제34, 세종8년 11월 15일 甲辰. 같은 책, 권제80, 세종20년 1월 1일 丙戌. 같은 책, 권제107, 세종27년 1월 1일 乙亥. 같은 책, 권제110, 세종27년 11월 13일 甲申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책 권제133, 五禮 賓禮儀式 宴隣國使儀에 의하면 일본이나 유구국과 같은 隣國의 사자는 정전에서 임금을 인견한 후 정전에서 배부는 연회에 참여했었지만 임금이 직접 연회를 베풀지 않을 경우에는 西廊에서 연회를 베풀어주도록 하였다. 물론 서랑에서는 일본이나 유구국의 사자뿐만 아니라(세종실록 권제112, 세종28년 6월 18일 甲寅) 建州衛의 도독이나(세종실록 권제78, 세종19년 7월 1일 己丑) 兀良哈의 都指揮(위와 같은 책 권제79, 세종19년 10월 1일 丁巳) 등에게도 연회를 베풀었다. 반면에 南廊에서는 이보다 아래인 왜인이나 야인의 추장 또는 사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의 사신을 수행해서 온 婢子들에게(세종실록 권제68, 세종17년 4월 26일 丁卯.) 음식을 대접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서랑과 남랑의 공간의 위계를 보면 서랑이 남랑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26) 태조실록 권제8, 태조4년 9월 29일 庚申. ‘북쪽 행랑 29간을 통하는 행랑은 북행랑에서 정전의 북쪽에 닿았고, 水刺間 4간과 東樓 3간은 상하층이 있다.’ 이 사료는 경복궁이 완공된 후 규모와 배치를 기록한 내용으로 경복궁 정전의 행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랑을 설명하면서 수라간이 그 중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수라간 4칸이 정전의 행랑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식은 인조 때의 창덕궁 영건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²⁷⁾

3. 정전

정전은 각종의 의례와 행사가 행하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전의 내부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의례나 행사들을 파악하고 의례나 행사들이 거행될 때 관련자들의 내부공간 이용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전의 내부공간에서 중심적인 시설인 어좌의 사용과 구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1. 정전에서의 의례와 내부공간의 이용방식

정전에서 치러지는 정기적인 의례로는 먼저 朝參과 朝賀가 있는데 조참은 매월 초 5일, 11일, 21일, 25일에 하고, 조하는 정조, 동지, 초하루, 보름, 그리고 왕과 왕비의 誕日에 하도록 되어있다.²⁸⁾ 또한 정조, 동지, 성절, 천추절에 중국 황제에게 하는 망궐례가 있다. 그 외에 황제의 조칙이나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 문무과전시의 등 각종 의례와 양로연 등 다양한 연회가 베풀어졌는데²⁹⁾ 이중에서도 受朝를 정전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로 인식했다.³⁰⁾ 이처럼 정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거행되었고 정전의 공간이용방식도 다양했기 때문에

27) 인조 때 조성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의하면 월랑의 내부 바닥 마감에 운돌이나 마루가 깔리었고 일부는 虛間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金東旭 「仁祖朝의 昌慶宮 昌德宮 造營」 『文化財』 문화재관리국, 1986. 12. p.27 참조.

28) 조참일은 원래 매월 1, 6, 11, 16, 21, 26일이었는데 단종 때에 1, 5, 11, 15, 21, 25일로 바뀌었다.(단종실록 권제10, 단종2년 3월 5일 丙辰) 다만 삭망에는 조하가 거행된다. 그리고 朝參의 날자는 지켜졌지만 의례가 거행되는 빈도 수는 임금이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다.

29) 經國大典 卷之三 禮典 朝儀條 및 宴享條, 세종실록 권제90, 세종22년 8월 19일 戊子條 등 참조. 본 논문에서 의례관련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의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종 때에 완성된 『國朝五禮儀』를 참고하였다.

30) 태조실록 권제8, 태조4년 9월 29일 경신조에 “正殿五間受朝之所 在報平廳之南”라 한 것으로 보면 조회를 정전의 대표적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실록 권제13, 세조4년 8월 13일 무진조에서도 임금이 秋夕祭의 飲福宴을 근정전에서 베풀려고 할 때 우승지 韓繼美 등이 ‘근정전은 여러 신하에게 朝會를 받는 곳이며, 연회를 여는 장소가 아닙니다.’고 하고 세종실록 권제97, 세종24년 8월 5일 壬辰에서도 역시 ‘勤政殿은 殿下受朝之所’라 하여 受朝를 중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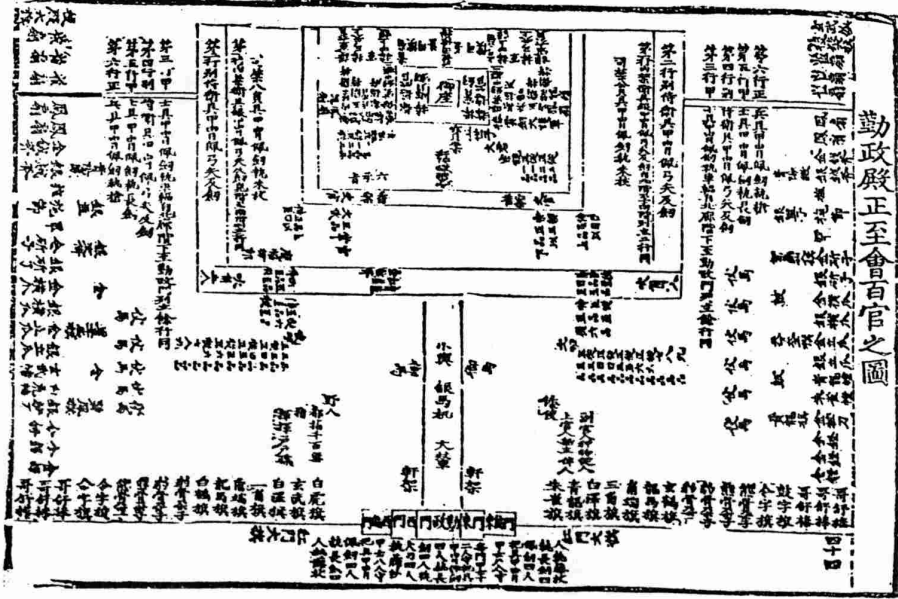


그림 1. 근정전정지회백관지도 (『國朝五禮儀(4)』法制處, 1982. 7. p.88에서 인용)

정전의 내부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출입하였고 어떻게 공간을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御殿에서 대소 朝禮를 거행할 때 殿 안에는 대인과 사관 그리고 시위관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³¹⁾ 왕세자도 殿內가 아닌 전정에서 임금에게 朝賀를 드렸으며 이때 전내에 들어간 관원들은 시위관원과 승지, 사관들이다.³²⁾ 왕세자의 조하가 끝난 뒤 문무 백관이 전정에서 조하를 드릴³³⁾ 때 전내에 들어간 관원은 시위관원과 승지, 사관들이었으며, 선전관과 대치사관, 판통례 등 의례를 진행하는 관원들은 필요할 때만 전정에 출입하고 있다. 이 예는 正至朝賀 때의 경우이지만 삭망이나 賀祥瑞儀 또는 기타의 가례의식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³⁴⁾

正至 때 왕세자와 문무백관의 朝賀가 끝난 뒤 계속해서 正至會儀가 거행되는데 전내에 들어가는 관원들은 조하 때와는 다르다. 조하 때 전정에 있었던 종친과 문무백관들 중에서 왕세자와 종친 2품 이상, 문무백관 중에서 2품 이상이 전내로 들어갔으며 승지도 역시 전내의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조하 때 전내에 있었던 사관은 殿外의 기단 위에 위치하며 정3품 이하의 관원들은 전정에 위치한다.³⁵⁾(그림1. 勤政殿正至會百官之圖 참조)

전내에서 이들의 위치를 보면 왕세자는 어좌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있고, 왕세손은 왕세자의 뒤 조금 남쪽에 있으며 그 뒤 조금 남쪽으로 종친 2품 이상의 자리이다. 문무 2품 이상의 자리는 어좌의 서남쪽에 겹줄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으로 하여 설치하였고 승지는 서남쪽 모퉁이에 북향하여 동쪽을 상으로 하며 사관은 전 밖에 나가서 부복하였다.

다만 전내에 오른 사람의 酒卓을 殿의 밖에 설치하였고 왕세자와 왕세손, 의정이 전내에 차례로 들어가 임금에게 술을 올리고 나와서 자리(位)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서 자리(位)가 殿內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성종 때의 勞酒儀에는 시연관들이 殿內에 있는 것으로 보아³⁶⁾ 2품관 이상의 관원과 중

31) 세종실록 권제50, 세종12년 윤12월 23일 己未.
 32) 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正至王世子朝賀儀.
 33) 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正至百官朝賀儀. 원래는 왕세자와 신하들이 함께 전정에 들어가 조하를 드렸었는데(같은 책 권제50, 세종12년 12월 2일 戊辰 참조) 이후 왕세자의 조하가 끝난 후에 신하들이 조하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같은 곳, 윤12월 23일 己未)
 34) 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朔望王世子朝賀儀條 및 같은 책 朔望百官朝賀儀條, 賀祥瑞儀條 그리고 같은 책 권제133, 五禮 嘉禮儀式 등 참조. 그리고 세종실록 51권, 세종13년 3월 14일 무인조의 五日朝參儀에 의하면 조참의를 근정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례도 마찬가지로

인데 다만 전내의 승지나 사관의 자리는 없었다.
 35) 세종 132 五禮 嘉禮儀式 正至會儀.

친들은 임금에게 배례를 마친 후 전내에 들어가서 의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간의 이용방식은 정치회의 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풀 경우에도 유사하였다.³⁷⁾

이상의 예들은 국왕이 중심이 되는 경우이지만 중국 황제와 관련된 의례에서는 공간사용이 이와는 다르다. 즉 망궐레나 조서, 칙서 등을 맞이하는 의례 등에서 임금은 전내에 위치하지 않고 정전 앞의 월대에서 拜禮를 하는데 망궐레 때는 전내에 호위관원이 배치되지 않고, 칙서나 조서 등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사신과 의례에 필요한 일부 관원만이 전내에 들어간다.³⁸⁾

정전의 내부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례의 대상이 놓이는 위치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침이나 조하와 같이 임금이 정전에 앉아서 의례에 직접 참여할 때 어좌는 정전 북쪽 벽의 중앙에서 남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간이용방법이다. 그러나 의례의 대상이 위계상 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달라진다.

먼저 황제와 관련된 의례는 대부분 정전의 중앙에 闕庭이나 闕牌가 놓이며³⁹⁾ 그 앞에 조서나 칙서, 사물 등을 놓기 위한 詔案, 勅案, 賜物案 등이 위치한다. 임금이 황제의 칙서나 조서 등을 받을 때는 이것을 龍亭에 넣어 근정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용정이 정전에 오르면 사신이 칙서나 조서를 案에 두고서 의례를 행하게 된다. 이 의례가 끝나면 정전의 靑階과 안을 치우고 임금이 사신이 위치할 동서쪽의 바닥에 褥을 설치하여 예를 행한

다음 褥을 치우고 茶禮를 행한다.

물론 이러한 예는 황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曆日을 맞이할 때 靑階를 근정전한 가운데에 설치했으며⁴⁰⁾ 상왕을 봉송하거나 대비를 봉송하는 의례에서도 冊寶案을 정전의 한 가운데에 남향으로 설치하였다.⁴¹⁾

이처럼 중국의 황제나 상왕, 대비와 같이 임금보다 위계가 높고 의례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좌대신 靑階이나 靑階, 案 등을 정전의 중앙에 놓고서 의례를 행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어좌를 정전의 중앙에 설치하고 그 위에 임금이 올라가서 의례를 행한 예도 있었다.⁴²⁾

정전은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여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소의 조례 등에서는 시위관원이나 승지, 사관들만이 정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정치회나 양로연, 중국이나 일본사신들에게 베풀었던 각종 연회에서는 종친이나 문무관 2품 이상이 전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⁴³⁾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殿內에 들어갔을 때 공간의 이용방식은 위계상 북쪽이 남쪽보다 높고, 동쪽이 서쪽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신하들의 위치가 정해진다. 물론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치러지는 의례와 좀더 자유로운 형식의 연회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조정의 신하와 일본이나 중국의 사신 등은 각각 서로 다른 신분적 지위에 의해 殿內에서의 공간이용방식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

36) 세종실록 권제51, 성종6년 1월 26일 병자 勞酒儀條 '진하가 만약 내전에 들어가면, 시연관 이하는 동서로 나누어 나와서 각각 계하에 반복한다.' 이 의례는 인정전에서 행한 것인데 시연관이라 함은 전내에 들어가 위치하는 2품 이상의 관원과 종진을 말하며, 이들의 위치와 의례의 진행방식은 正至會儀와 같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시연관이 동서로 나누어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인정전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전내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7) 세종실록 권제133, 五禮 嘉禮儀式 養老儀條, 성종실록 권제51, 성종6년 1월 26일 丙子 勞酒儀條 등 참조.

38) 세종실록 권제25, 세종6년 9월 1일 계유, 大行皇帝擧哀·成服·學臨儀註條. 그리고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의 拜表儀, 迎詔書儀, 迎勅書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條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條, 권제135, 五禮 凶禮儀式 賜賻儀條 등 참조.

39) 일반적으로 망궐레나 칙서, 조서 등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闕庭이 놓이고 대행황제를 위한 의례의 경우에는 靑階가 아니라 闕牌가 놓인다. 그리고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에서는 靑階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條)

40) 세종실록 권제71, 세종18년 1월 3일 기사조 참조.

41) 세종실록 권제2. 세종즉위년 11월 7일 癸丑條. 上王封崇儀 및 大妃封崇儀 참조.

42) 세종실록 권제1, 세종즉위년 9월 27일 갑술, 謁廟後朝賀儀條, 같은 책 권제129, 五禮 吉禮儀式 親祭社稷儀, 親給宗廟儀의 車駕還宮條, 같은 책 권제130 五禮 吉禮儀式 四時及臘親享宗廟儀 車駕還宮條, 그리고 단종실록 권제1, 단종즉위년 5월 18일 경술 卽位儀條. 이 사료들에 의하면 대부분 社稷이나 宗廟에 제사를 지낸 후에 정전에서 행하는 의례로서 어좌를 當中에 설치하였으며 단지 단종 때에는 즉위식에서 어좌를 正中에 설치하고 있다.

43) 정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2품 이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관원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세종실록 권제71, 세종18년 1월 3일 己巳의 迎曆日儀에 의하면 예를 마친 후 근정전에서 임금이 북벽에 앉고 舍人이 동벽에 앉아서 下馬宴을 베풀었으며 여기에서 舍人은 의정부 소속의 정4품 관리이다. 물론 이때 사인은 의례를 담당할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전내에 들어갔었지만 의례가 끝난 후 연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朝禮 등에 참여했던 승지나 사인의 예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朝賀儀와 그림1에 의하면 대소 조례 때 시위관 원들은 어좌의 후면과 좌우에 서있고 의례를 집행하는 관리들이 어좌 앞에 동서로 나뉘어 부복하고 있는데⁴⁴⁾ 이 사료들만으로는 정전에서 거행되는 의례에서 사람들의 공간이용방식을 파악할 수 없다. 각 의례의 형식에 따른 정전 내부에서의 공간 이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 A-1. 영돈녕부사로 致仕하게 한 權弘과 홍려시 경 任添年 등 4인은 전내에 들어오고, …… 홍이 갓을 벗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두 번 세 번 숙이므로, 임금이 좌석에 가도록 명하였다.⁴⁵⁾

사료 A-2. 통사가 使者와 副使를 인도하여 西偏階로부터 올라와 들어와서 앞 기둥 사이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부복하고, ……⁴⁶⁾

사료 A-3. 양녕대군 이제 …… 등은 殿閣의 동쪽 기둥의 안쪽에 앉았고, 운성 부원군 박종우 …… 등은 전각의 서쪽 기둥 안쪽에 앉았으며, 유구국의 正使 普須古와 副使 蔡璟은 전각의 동쪽 기둥 밖의 자리에 앉았고, …… 사용제조가 제 1선을 올리니 시연관 및 사신이 다 전내와 기둥 밖에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꿇어앉아 올리기를 마치고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 앉았으며, …… 사준 별감이 시연관 이하에게 술을 나누어주면, 매 잔마다 떨어져 앉아서 부복였다가 일어나 꿇어앉아서 마시기를 마치고는 부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⁴⁷⁾

사료 A-4. 처음으로 六曹參議로 하여금 대소 朝會에서 交床을 가지고 와서, 종2품의 아래에 앉게 하였다.⁴⁸⁾

사료 A-5. 왕세자는 대궐 안의 동쪽 가에서 북으로 가까이 첫 줄에 자리하고, 大君·諸君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대궐 안에 동서로 두 줄로 나누고, 3품 당상관과 종친 정4품 이상의 侍臣은 대궐 섬돌 위에 동서 두 줄로 나누고, 종4품 이하의 사신은 중간 섬돌, 혹은 마당에, 3품 이하 各品은 동서 행랑에 나누어 자리하였는데, 모두 繩床을 썼다.⁴⁹⁾

사료 A-6. 무릇 衙日의 한 모임(一會)에 東班의 당상이면 丘史가 있으므로 모두 胡床을 가지고 朝班에 앉게 합니다만, 西班의 行職으로서 당상인즉 구사가 없으므로 호상을 가지지 못하기에, 혹은 병을 핑계하여 참석하지 아니하며, 혹은 숨어서 피하였다가 뒤에 들어오며, 혹은 당하관과 섞여 처하기에 자못 체모가 없습니다. 무릇 한 모임에는, 청컨대 객인이 앉는 호상을 미리 뜰 가운데 설치하여서 서반의 재상들로 하여금 열을 지어 앉게 하소서.⁵⁰⁾

사료 A-1은 근정전에서 양노연을 베풀 때의 일로 殿內에는 권홍 등 4명이 있는데 관을 벗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부복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신하들이 어떠한 坐具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정전에서 신하들의 공간이용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신의 예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⁵¹⁾

사료 A-2는 일본이나 유구국 등에서 보내온 서신과 禮幣를 받는 의식으로 사신들은 전내에서 꿇어앉아 부복하였다. 이 의식이 끝나면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에는 2품의 관원에 해당하는 사자와 부사가 전내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殿 밖에서 연회를 치른다.⁵²⁾ 조정의 신하들도 이들 일본사신들처럼⁵³⁾ 전내에서 부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A-3은 근정전에서 음복연을 베풀고 유구국의 사신을 인견할 때의 일로 정2품인 판서 이상이 전내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사와 부사도 전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정전 내부의 기둥에 의해 구획된 각각의 공간이 方位와 연계되면서 공간별 위계가 형성되고, 이 위계에 따라 각각의 품계에 적합한 자리가 배정되어 기둥이 공간 구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50) 세종실록 권제139, 성종13년 3월 30일 戊戌.

51) 일본이나 유구국 등의 사신들은 그들의 직급에 따라 조신의 품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 관리들의 공간이용을 유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正至百官朝賀儀 등에 '일본과 琉球 등 나라의 사신과 副使는 종2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諸島의 倭使의 上官과 副官은 종5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押物과 船主는 종7품의 반열에 해당되고, 伴從은 정7품의 반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52) 세종실록 권제133, 五禮 賓禮儀式 宴隣國使儀 참조

53) 세종실록 권제28, 세종7년 5월 11일 庚辰에도 동일. 또한 같은 곳, 4월 12일 辛亥條에는 임금이 일본사신을 근정전에서 인견할 때 사신들은 전내에서 부복하면서 임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44) 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正至王世子朝賀儀 및 正至百官朝賀儀. 또한 세종실록 권제50, 세종12년 12월 2일 戊辰 참조.

45) 세종실록 권제90, 세종22년 9월 6일 乙巳.

46) 세종실록 권제133, 五禮 賓禮儀式 受隣國書幣儀.

47) 세조실록 권제26, 세조7년 12월 12일 戊寅.

48) 태종실록 권제17, 태종9년 6월 9일 庚戌.

49) 세종실록 권제27, 세종7년 1월 1일 壬申. 여기에서 대궐이라 함은 원문에 '殿'으로 되어 있으며 곧 仁政殿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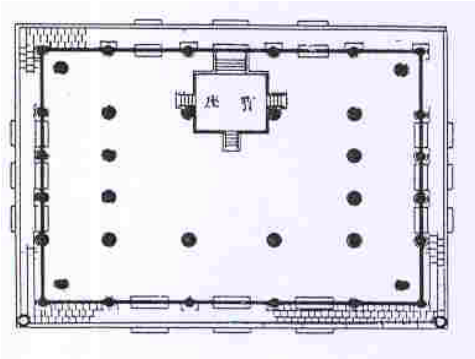


그림 2. 근정전 평면도 (장경호, 『韓國의 傳統 建築』 文藝出版社, 1994. p.286.에서 인용, 편집)

이 사료에서 제1선을 올릴 때 시연관과 사신이 전내의 楹外로 나아가 부복한 다음 다시 돌아가 앉았다(還坐)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바닥에 앉았을 것이며 시연관 이하가 술을 마실 때에도 꿇어 앉아서 마신 후 자리로 돌아갔던 점을 고려하면 시연관과 일본사신들은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연회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⁴⁾

원래 정전이라는 곳은 임금이 중요한 의례를 거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이 정전에 행차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이 참여하지 않고 대신들이 정전에서 업무를 본 경우가 있었다. 이때 정전에서는 임금이 없을 때에라도 의자(交椅)나 繩床을 사용할 수 없었고 바닥에 앉아서 업무를 보았다.⁵⁵⁾ 이것으로 보아 임금이 정전의 의례나 연회에 직접 참여했을 때에는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의자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물론 사료 A-4 이하와 같이 조회나 연회 때에 신하들이 의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사료 A-4에 의하면 육조의 참의는 正三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2품 아래에 앉는다. 그런데 이때 육조 참의에게 처음으로 교상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종2품 이상은 그 이전부터 이미 교상이나 교

의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⁵⁶⁾ 여기에서 교상은 휴대용 좌구였다.⁵⁷⁾ 그런데 대소조회 때에는 사관이나 대인 등 일부 관원을 제외하고 전내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교상을 사용한 곳이 殿內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A-5는 인정전에서 조하를 받고 群臣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때의 일로 모두 승상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나 행랑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사료 A-6의 ‘衙日一會’가 동반과 서반이 모두 모이는 朝班이라 한 것을 보면 조회 때의 일일 것이다. 호상은 휴대용 좌구로 주로 옥외에서 사용했던 의자이다.⁵⁸⁾ 여기에서 호상은 당상관이 사용하는 데 뜰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전내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사료 A-4에서 A-6에 의해 조회나 연회 때 정전의 외부에서 의자를 사용한 예들을 볼 수 있었지만 각 시기별로 의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품계와 의자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전 구역에서 의자를 사용한 것이 상시적인 규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예들은 조정의 신하나 일본 사신의 경우였는데 중국 사신은 이와는 다르다. 그리고 중국 사신들 중에는 조선인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중국인 사신들과는 달리 조선의 신하라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殿內에서 의례에 참여하는 방식이 또한 다를 것이다. 먼저 조선인으로서 중국의 사신으로 온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B-1. 오양이 두목 손증을 보내서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交椅에 앉고 손증은 殿內에 들어와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렸다.⁵⁹⁾

사료 B-2. 使臣 李忠이 예궐하니, 임금이 근정문 밖에 나가 맞이하여 대궐 안으로 이끌어 들어

54) 일본 사신들이 연회 때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실록 권제102, 세종25년 11월 17일 戊辰條에는 일본사신을 잔치할 때의 좌차는 判書는 東壁 교의에 앉게 하고, 上官은 서벽 교의에 앉게 하며, 船主와 押物은 조금 뒤로 繩床에 앉게 하였다. 여기에서 연회를 베푸는 주체는 임금이 아니라 判書이며 上官은 종5품, 선주와 압물은 종7품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근정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교의나 승상에 앉은 곳은 정전이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해당 관이었다.

55) 세종실록 권제97, 세종24년 8월 5일 壬辰.

56) 수장궁에서 노상왕이 술자리를 베풀 때 노상왕이 남향으로 交椅에 앉고, 상왕과 임금이 서향으로 해서 상왕은 交床에 앉았으며 임금은 平床에 앉았던 예로 보아(세종실록 권제 3, 세종 원년 2월 9일 甲申) 위계는 교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상, 평상의 순이라 하겠다. 따라서 종2품 이상은 교상이나 교의에 앉았을 것으로 보인다.

57) 세종실록 권제64, 세종16년 6월 30일 乙亥에 ‘(범찰이) 西壁에 繩床을 허락하였어도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交床을 서벽에다 놓고 앉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교상이 휴대용 좌구였음을 알 수 있다.

58) 이정국 외, 『高麗時代 起居樣式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6호, 1997. 6. p.133 참조.

59) 세종실록 권제95, 세종24년 2월 20일 辛亥.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임금은 서고 사신은 꿇어앉았다. 사신이 굳이 임금께서 북쪽에 앉으시어 남향하기를 청하고, 자기는 동남쪽 모퉁이에 앉아 다례를 행하여 끝나매, 곧 태평관으로 돌아갔다.⁶⁰⁾

사료 B-3. “우리들은 본토 백성입니다. 어찌 감히 전하와 자리를 마주 대하겠습니까?”하고, 두 사신이 친히 어좌를 북쪽에 옮기고 南面하여 자리하기를 굳이 청하니……임금이 일어나 장차 술잔을 돌리려고 하니……副使가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正座하시면 姜玉이 술을 올리겠습니다.’……두 사신이 전하를 扶掖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부사가 꿇어앉아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편안히 앉으시면 강옥이 마땅히 계속하여 3잔을 마시겠습니다.’⁶¹⁾

사료 B-4. 영접도감에서 使者의 좌석을 태평관 正廳의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烏漆交椅이다) 액정서에서 전하의 좌석을 서벽에 동향하여 설치하고,(朱漆交椅이다) 香案을 북벽에 설치하고……⁶²⁾

사료 B-5. 從官들은 다 안팎에 늘어서서 모시고 있고, 내시와 통역들은 그 주위에 엎드려 있다.(내시는 모두 오사모, 흑각대를 하고 부복하여 왕이 앉은 의자의 자리를 받들고 있으며, 통사, 승지는 좌우에 부복하여 전하는 말을 기다린다. 우리 두 사람의 자리 뒤에도 통사가 부복하고 있는데 다만 내시는 없다.)⁶³⁾

사료 B-1에서 손중은 조선사람으로서 중국의 正使가 아닌 두목이었기 때문에 사신의 경우와는 다르다. 임금이 근정전에서 손중을 인견할 때 임금은 어좌가 아닌 교의에 앉았으며⁶⁴⁾ 그래서 임금이 일어서는 것을 ‘上起立’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손중은 꿇어앉았는데 손중이 계속 꿇어앉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자에 앉았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두목에 불과하며 조선사람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앉았다고 할지라도 바닥에 앉았을 것이다. 이 예는 임금이 조선출신의 두목을

맞이하는 경우이지만 두목이 아닌 正使나 副使의 경우에는 달랐다.

사료 B-2에서 중국의 사신인 이충은 조선사람인데⁶⁵⁾ 근정전에서 임금이 베풀 다례에 참여하고 있다. 이충은 조정 신하의 예로서 임금과 이야기할 때 꿇어앉아서 하였으며 또한 임금을 남향하도록 하고 자신은 북쪽을 향해 앉았다. 이 사료에 의하면 임금이 처음부터 북쪽에서 남향하여 앉지는 않았는데 임금과 사신이 어떠한 좌구를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어있지 않다.⁶⁶⁾

사료 B-3은 조선사람인 鄭同과 姜玉이 중국사신으로 왔을 때 인정전에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임금과 자리를 마주 대한다고(與殿下 對座) 한 것을 보면 원래는 사신들도 의자를 사용해서 임금과 동서로 마주보고 앉았음을 말한다. 또한 두 사신이 직접 어좌를 옮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좌는 교의일 것이며⁶⁷⁾ 특히 임금이 일어나 술잔을 돌리려고 할(上起將行酒) 때의 ‘起’는 사료 B-1에서와 같이 교의에 걸터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신이 임금을 扶掖해서 上座했다는 것은 의자 위에 평좌로 앉도록 했음을 의미하며⁶⁸⁾ 따라서 두 사신이 임금에게 正坐하거나 편안히 앉으라(安坐)고 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사료 B-4는 정전이 아니고 태평관에서 임금과 의례를 행할 때의 예이지만 임금이나 사신의 공간 이용방식은 궁궐의 정전과 차이가 없다. 특히 正廳에서 임금이 서벽에 앉고 사신이 동벽에 앉는데

65) 세종실록 권제68, 세종17년 4월 26일 丁卯.

66) 이러한 예는 세종실록 권제69, 세종17년 7월 24일 癸巳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사료도 역시 조선사람으로서 중국의 사신으로 온 金福과 金角을 근정전에서 맞이하여 다례를 행하는 경우인데 사료 B-2와 마찬가지로 임금은 서있고 사신은 꿇어앉아서 다례를 행하고 있다.

67) 성종실록 권제119, 성종11년 7월 12일 庚寅條에 ‘上使가 친히 御座를 잡아서 남쪽을 향하여 베풀고’라 하여 사신 혼자서 어좌를 옮겼는데 혼자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좌구는 교의일 것이다. 또한 세조실록 권제46, 세조14년 4월 9일 戊戌條에서도 조선사람인 姜玉과 金輔 등이 사신으로 와서 임금이 근정전에서 다례를 행할 때의 일인데 어좌를 서쪽에 설치했다가 조금 옮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좌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좌구였으며 역시 교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좌를 서쪽에, 사신의 자리를 동쪽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사신들의 좌구 역시 어좌와 같은 좌구였을 것이다.

68) 당시 의자는 올라가서 가부좌로 앉을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다. 이정국의, 앞의 논문, p.134.

60) 세종실록 권제68, 세종17년 6월 13일 癸丑.

61) 성종실록 권제117, 성종11년 5월 26일 乙巳.

62) 세종실록 권제133, 五禮 賓禮儀式 宴朝廷使儀. 세종실록 권제135, 五禮 凶禮儀式 迎賜諡祭及弔聘儀도 태평관에서 교의를 설치하는 예인데 다만 임금의 교의를 白緇布로 싸는 것이 다르며 이는 홍례의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63) 董越著 윤호진역 『朝鮮賦』 도서출판 까치, 1994. 12. p.71.

64) 세종실록 권제95, 세종24년 2월 22일 癸丑條에서도 조선출신의 두목인 張旺과 黃榮이 근정전에서 하직할 때 임금은 교의에 앉았다

궁궐의 정전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위계상 동쪽이 상이기 때문에 모화관의 정청이나 궁궐의 정전 모두 임금이 교의에 앉으면 사신도 당연히 교의에 앉았던 것이다. 이처럼 정전에서 임금이 사신과 함께 사용한 좌구는 교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B-5는 正使인 동월과 副使인 왕창이 왔을 때의 일로 이들은 중국인 사신들이었다. 실록에 의하면 사신들은 성종19년 3월 13일(丁丑)에 모화관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임금이 경복궁에서 조서와 칙서를 받은(69) 다음 동월과 왕창에게 다례를 베풀었는데(70) 사료 B-5는 그 이후 인정전에서 請宴을 베풀었을 때의 일로 추정된다.(71) 이 사료에 의하면 내시와 통사, 승지는 부복하고 있었고 그 외에 從官들이 있었는데 종관에는 재상들도 포함되며(72) 임금이 사신과 다례를 행할 때 이들은 서 있었다.

3-2. 어좌의 구조와 상설문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금이 정전에서 중국 사신과 다례 등을 행할 때에 임금과 사신은 교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백관들이 참여하는 각종 조회나 의례에서는 교의 대신 어좌나 어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중국사신과의 의례 때에도 어좌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때의 어좌는 교의를 의미하며 이 교의는 백관의 조회 등에서 임금이 사용했던 어좌와는 다른 것이다.

사료 C-1. 司尊提調가 술을 제1작에 따라 왕세자에게 주면, 왕세자가 작을 받아 어좌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작을 사준제조에게 주고, 제조가 작을 받아 南階로부터 올라가 꿇어앉아 올리면, 내시가 전해 받들어 어좌 앞에 둔다(案이 있다).(73)

사료 C-2. 개국공신 조인옥의 아들 조관이 가장 늙었으므로 특별히 술을 내려 주고, 환관으로 하여금 부축하여 내려가게 하였다. …… 임금이 효령대군 이보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임금이 御榻을 내려와서 술을 받아 마셨다.(74)

사료 C-3. “대궐 안 어탑의 前梯는 이미 붉은

칠을 했지만, 東梯와 西梯는 바탕이 소박하여 문체가 없으니, 모두 붉은 칠을 하고 문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75)

사료 C-4.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거행하였다. 사용원제조 옥산군 이제와 영가군 권경이 饌案을 들고 어탑 앞의 사닥다리를 오르다가, 사닥다리가 밀려 떨어져서 이제 등이 饌案을 안고 넘어졌다.(76)

사료 C-5. 근정전 御座에 일찍이 眞言을 써 놓아서 佛座와 같다 해서 이미 명하여 고쳤거니와, 어좌의 上屋 중에도 또한 眞言 여덟 글자가 있사오니, 청컨대, 모두 없애도록 하소서.(77)

사료 C-1은 정지회의 때의 일로 제조가 술잔을 올릴 때 어좌의 남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시에게 주고 내시가 받아 어좌 앞에 있는 案에 놓는다. 그리고 정전에서 열리는 양로연에서도 제조가 임금에게 饌案을 올릴 때 남쪽의 계단으로 올라가고, 치울 때에는 동쪽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78) 어좌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좌에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의례에서 임금이 어좌에 오른다고 하거나(殿下陞座) 내려온다고(殿下降座) 하였다. 또한 사료 C-1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상부에는 내시가 있었으며 어좌 앞에는 案이 놓여있고 제조가 꿇어앉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었다. 아울러 그림1을 보면 계단 상부의 어좌 뒤에서는 都摠管이 좌우로 시립하고 있다.

사료 C-2는 인정전에서 열린 功臣宴으로 임금이 조관에게 술을 내려주고 부축해서 내려가라고 하였는데 어좌대의 계단 때문에 부축하여 내려가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임금이 효령대군에게 술을 받기 위해 어탑을 내려왔다고(下榻) 하였는데(79) 이러한 사정은 어탑이 높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사료에서는 어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료로는 어탑의 구조를 알 수 없다.

사료 C-3에서 어탑은 근정전의 어탑을 말하는 데(80) 前梯와 東西梯라 하여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

69) 성종실록 권제214, 성종19년 3월 13일 丁丑.

70) 동월, 위의 책, p.65 참조.

71) 성종실록 권제214, 성종19년 3월 16일 庚辰.

72) 성종실록 권제132, 성종12년 8월 3일 乙巳條에 의하면 임금이 정전에서 사신을 접대할 때 재상과 승지, 내관 등이 전내에서 시위하고 있다.

73) 세종실록 권제132, 五禮 嘉禮儀式 正至會儀.

74) 세종실록 권제44, 세조13년 11월 2일 甲子.

75) 성종실록 권제57, 성종6년 7월 27일 甲戌.

76) 성종실록 권제75, 성종8년 1월 1일 庚子.

77) 세종실록 권제34, 세종8년 10월 13일 癸酉.

78) 세종실록 권제133, 五禮 嘉禮儀式 養老儀.

79) 세종실록 권제45, 세조14년 1월 17일 戊寅條에서도 음복연을 베풀 때 兀良哈 時加古로 하여금 어탑에 올라와 술을 올리게 하였다.(升御榻進酒)

80) 한글번역본에는 ‘대궐 안의 어탑’이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

는 것으로 보아 사다리와 같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계단은 전면과 좌우에만 있었으며 후면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인정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료 C-4에 의하면 인정전에서 회례연을 베풀 때의 일로서 역시 前梯라 한 것을 보면 임금이 어탑을 오를 때 계단을 올라가서 앉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면의 사다리는 임금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사다리가 밀려났다는 것은 사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가변식으로 계단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탑이 이처럼 계단을 통해 오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탑에 오르개(陞御榻) 하였다는 것은⁸¹⁾ 어탑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탑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간 것을 말한다.⁸²⁾

여기에서 榻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낮고 주변에 난간이 있기 때문에 의자와 같이 걸터앉기에는 불편하여 그 위에 올라가서 가부좌나 평좌와 같은 형식으로 앉도록 되어 있는 坐具이다.⁸³⁾

정전에서 임금의 자리를 어좌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위의 사료에서처럼 御榻이나 榻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정전에 있는 임금의 자리가 어탑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던 것은 기록상 세조 이후부터 나타나기는 하지만⁸⁴⁾ 그 이전부터 정전이 아닌 곳에서의 임금의 자리는 어탑이라 했었으며, 그 이후에도 정전의 임금자리를 어탑이라는 용어와 함께 어좌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위의 사료들이 대부분 연회를 베풀 때의 일이지만 文科殿試儀에서도 어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⁸⁵⁾ 어탑이 연회뿐만 아니라 여러 의례에서 사용된 좌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한다면 어좌와 어탑은 서로 다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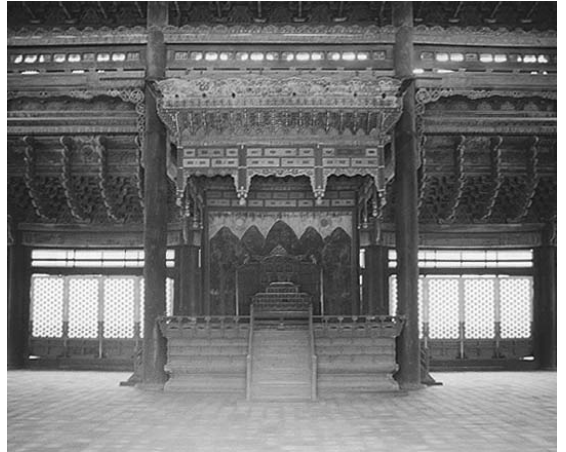


사진 1. 근정전의 어좌

류의 좌구가 아니라 御座로 어탑을 사용하였으며 어좌의 형태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어좌대가 있고 그 상부에 어탑이 놓이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어좌대는 어탑을 배치하고도 그 주위에 많은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넓이었다.

사료 C-5에서 어좌 위에 屋이 있다고 한 것은 어좌 위의 보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개의 형태가 현존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좌의 기본적인 형식은 현존하는 어좌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1. 근정전 내의 어좌 참조)

여기에서 上屋은 지극과 같이 殿內 북쪽 벽의 중앙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어좌가 이곳에 常設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임금이 이곳의 어좌에 앉아서 직접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전의 한 중앙에 龕정이나 龕패를 설치하고 행하는 의례에서는 문제가 된다. 일례로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는 의례에서 그것이 들어있는 용정이나 案이 정전의 중앙에 놓이는데 어좌가 용정이나 안의 북쪽에서 남향으로 놓인 상태로 의례를 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 황제의 칙서는 근정전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전에서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때 칙서의 동선은 근정전 내부를 통해서 사정전에 이르게 되며 근정전을 지날 때에는 어좌의 북문을 통해서 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전의 북쪽에 어좌가 그대로 있었다면 칙서의 이동이 불편했을 것이다.⁸⁶⁾

의하면 한명회가 임금에게 근정전의 편액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殿內御榻 前梯則已朱漆’이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궐이라 한 것은 근정전임을 알 수 있다.

81) 주 79) 또한 세종실록 권제99, 성종9년 12월 3일 庚寅.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문과전시를 시험하였는데, 試官 정창손을 불러 어탑에 오르게 하여……’

82) 세종실록 권제243, 성종21년 8월 22일 壬寅條에 손순효가 즉시 어탑에 올라 啓事하였다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의미이다.

83) 이정국 외, 앞의 논문 p.135 참조.

84) 주 74) 참조. 여기에서는 ‘上下榻’이라 하여 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임금의 탑이기 때문에 어탑이다.

85) 주 81) 참조.

86) 세종실록 권제92, 세종23년 1월 1일 己亥. ‘기일 전에 유사

또한 임금이 근정문에서 조참을 받을 때에는 사정전에서 출발하게 된다. 사정전에서 나와 근정문에 이르는 동선은 원래 근정전의 동쪽으로 지나가도록 되어있었는데 세조 10년부터는 근정전의 중앙을 거치도록 하였다.⁸⁷⁾ 조참의에 의하면 임금이 사정전에서 근정문으로 이동할 때 輿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근정전의 중앙에 어좌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는 여의 이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조참의는 정전에서 치러지는 각종 의례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행된 의례로 처음에는 근정전에서 행하여지던 것이⁸⁸⁾ 세조 22년에 근정문에서 거행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근정문에서 행하여진 것은 세종23년 1월 이후의 일이다.⁸⁹⁾ 그런데 조참의가 근정전에서 행할 때에는 어좌가 근정전 북벽에 놓였으며 근정문에서 행할 때에는 正中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임금이 어좌에 오르고 내려간다고(殿下降座, 殿下降座) 한 점으로 보아 근정문에 놓인 어좌 역시 근정전에 설치된 어좌와 같은 구조로 추정된다. 근정문에서 조참의를 행하는 경우 비록 그곳이 御道에 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문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좌를 그곳에 항상 설치된 상태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며 의례가 행하여질 때마다 어좌를 설치하고 의례가 끝나면 어좌를 해체하거나 옮겼을 것이기 때문에 어좌의 설치와 해체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정전이나 인정전에 있던 어좌도 필요에 따라 설치나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사료 C-4의 경우와 같이 어좌의 사다리가 밀려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례에서 有司가 어좌를 설치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었던 것도 이처럼 정전 내부에 어좌가 常設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만약 어좌가 상설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가 關牌를 전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勅書案을 궤패 앞에 설치한다. …… 사신이 칙서를 받아두고 근정전의 어좌 북문으로 해서 사정전 문안으로 들어오면 전하는 국궁한다.’

87) 세종실록 권제33, 세조10년 4월 25일 丁未.

88) 세종실록 권제51, 세종13년 3월 14일 戊寅, 물론 조희는 그 이전부터 이미 있었는데 이때는 예조에서 五日朝參儀의 의례방식을 정하여 올린 것이다.

89) 세종실록 권제90, 세종22년 8월 19일 戊子 및 세종실록 권제92, 세종23년 1월 11일 己酉 참조. 근정문에서 조참을 받기 시작한 초기에는 잘 지켜졌지만 세종조 후기에 가면 다시 근정전에서 받게 된다. 그러다가 단종 때에 다시 근정문에서 조참을 받게 된다.(단종실록 권제9, 단종 원년 11월 20일 壬申.)

이동이 가능해서 별도로 어좌의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4. 결론

지금까지 궁궐의 정전과 그 주위를 둘러싼 행랑의 내부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행랑은 숙소, 창고, 관아, 연회장소 등과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각 용도에 따라 내부공간의 형식도 흙이나 전바닥, 마루, 온돌 등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정전에서 의례를 행할 경우에 의례를 진행하는 관원들을 제외하고는 전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殿庭에서 의례가 행하여졌다. 그러나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는 연회의 경우에는 2품관 이상의 관원들이 전내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때에도 의례를 할 때에는 부복하였고, 연회 때에는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행하였다. 정전에서 중국 사신과 다례 등을 행할 때에는 임금과 사신은 교의에 앉아서 행하였으며 이때 의례를 진행하는 관원은 임금과 사신 주변에 부복하였고 전내에 있던 다른 관원들은 시립하여 있었다.

각종 조희 때 임금이 사용하였던 어좌는 계단이 만들어진 어좌대가 있고 어좌대의 상부에는 어탑과 案이 놓이고 또 그 주위에 내시와 시위관원이 서있을 정도의 넓은 형식이었다. 그리고 어좌는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法制處譯註, 韓國法制研究院, 1993.
- 『國朝五禮儀』法制處, 1981.
- 『조선왕조실록』국역CD-ROM(국회도서관) 및 영인본(서울대학교 규장각 제공 원문정보)
- 董越著, 윤호진역 『朝鮮賦』 도서출판 까치, 1994.
- 郭淳照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 이정국 외, 「高麗時代 起居樣式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6호, 1997. 6.
- 曹在模 「朝鮮時代 宮闕의 儀禮運營과 建築形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

A Study on the Usage of the Interior Space of Jeongjeon Zone at the Royal Palace in the 15th Century

-Focused on the study of the literature-

Yi, Jeong-kuk
(Doctor of Engineering)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interior space of the Royal Palace in the 15th Century, the early years of Joseon Dynasty.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center of the Royal Palace, that is Jeongjeon(正殿, the royal audience chamber) and Haengrang(行廊, which encloses Jeongjeon on four sides and has many room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usage of the interior space because the architectural space consists of the space unified by the organic function of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space.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nterior space of Jeongjeon and Haengrang at the Royal Pal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erior space of those building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Haengrang has several uses such as a night duty room, a storehouse, a government office or a banquet hall etc. So the interior spaces were finished with various methods that were suitable for the use of each room, and the material of the floor were the ground, Maru(the wooden floor) or Ondol(the Korean traditional heating system)

There were held many kinds of ceremonies in Jeongjeon,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could not enter the inside of that building and took part in the ceremony on the front court of Jeongjeon, except the men performing the ceremony. But the high ranking officials could enter the inside when King gave a banquet and there, they prostrated themselves before King. They sat down with their legs crossed on the ground floor instead of sitting on a chair.

When King held tea ceremony with Chinese envoys in Jeongjeon, they sat on Gyoui(交倚, a kind of armchair). The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forming the ceremony in Jeongjeon prostrated himself around the King and the Chinese envoys and others stood around them.

keywords : Jeongjeon, Haengrang, the usage of the interior space.
